

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5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유만희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박 석, 박영한,
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
옥재은, 유정인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)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(법 제 19조), 국립·공립 정신병원(법 제21조), 정신요양시설(법 제22조)에서 퇴소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 따라서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의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,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퇴소자 지원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 함.(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1조 및 제22조”를 “제21조, 제22조 및 제2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(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) 등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관련 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2조 (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)	○	개정안 시행 시 현행 동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-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(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) 등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본 안 제12조(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)에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¹⁾ 정신재활시설을 추가하여 정신재활시설 퇴소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제2호 주거지원(붙임 참고)²⁾, 제3호 정착금 지원비용이 추가로 발생함
 - 따라서 서울시 내 정신재활시설 퇴소자 및 주거지원 통계를 기준으로 주거지원 및 정착금 지원 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려 하였으나 시민건강국 문의결과 정신재활시설 퇴소자 통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, 25개 자치구 자료 수합 요청을 통해 2023년도 정신재활시설 퇴소자³⁾를 파악하였음
 - 그러나 퇴소자 전원이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기에 소요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실질적 주거지원 수요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현재로서는 비용추계가 어려움
 - 또한 임의로 주거지원 수요자를 전제하여 단순 추정 시 실제 수요인원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비용추계가 곤란하기에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함

1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**정신재활시설**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2) 기추진사업 有(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) / 2024년 사업예산은 1,107,325천원임
 3) 총446명으로 비용추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수합한 자료 기준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[붙임] 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(본 개정안 제12조 관련)

□ 사업목적

- 2017년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탈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욕구 및 필요에 적합한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및 서울형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(연례반복)
- 지원대상 : 만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(서울시민)
- 추진방법 : 사업자 공모를 통한 서비스제공기관 선정
- 사업내용
 - 만19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을 준비하지만 주거마련이 어려운 대상에게 지원주택 제공(개인이 직접 계약, 최장 20년 거주 가능)
 - 독립적이며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주거와 정기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
- 소요예산 : 1,107,325천원(전액 시비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역사회내 안정적 정착 및 재활동기 제공

자료 :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설명서 발취